



제432회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범위에 민주화운동으로
ROTC지위를 상실한 자를 포함 〉
■ 양부남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888호)

2026. 2.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조 문 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양부남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5. 12. 4.
3. 회 부 일 : 2025. 12. 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된 사람과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회복과 보상을 함으로써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생활안전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민주주의의 발전과 국민화합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되었고, 민주화운동 관련자 범위에 민주화운동으로 학사징계를 받은 사람도 포함하고 있음.

당시 대학생들이 민주화운동을 주도하였고 이에 상이 등 신체적 피해를 입지 않았더라도 학사징계를 받은 사람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한 것임. 하지만 학사징계의 범위가 한정적이어서 대학생 신분으로 민주화운동에 참여하여 학군사관후보생(ROTC)의 지위를 상실한 자는 학사징계자에 포함되지 않아 이들이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범위에 민주화운동으로 학군사관후보생(ROTC) 지위를 상실한 자를 추가하여 관련자의 지위를 인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범위에 대학생 신분으로 민주화운동에 참여하여 학군사관후보생(ROTC) 지위를 상실한 자를 추가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민주화운동 관련자”(이하 “관련자”라 한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제4조에 따른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2. ----- ----- ----- ----- -----.
가. ~ 다. (생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거나 해직되거나 학사징계를 받은 사람	라. ----- ----- ----- <u>받거나 학군사관후보</u> <u>생 지위를 상실한</u> -----

현행법 제2조제2호는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 민주화운동으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앓거나 그 후

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거나 해직되거나 학사징계를 받은 사람 중 법 제4조에 따른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음.¹⁾

2000년 동법 제정 이후 2015년까지 5차에 걸친 심의 결과 총 9,514명이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되었고, 이중 4,939명에 대해 보상금 등 1,147억원이 지급되었음.

그런데,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범위에 학생 신분으로 민주화운동에 참여하여 학사징계를 받은 사람은 포함되어 있는 반면, 학군사관후보생 지위를 상실한 자는 제외되어 있어, 이를 추가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일각의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학군사관후보생(ROTC, Reserve Officers' Training Corps)은 대학 재학생에게 대학교 3학년부터 4학년까지 2년간 군사교육을 제공하여 전공학문과 군사지식을 고루 갖춘 우수 장교를 양성하는 과정으로,

1)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주화운동”이란 1964년 3월 24일 이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과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

2. “민주화운동 관련자”(이하 “관련자”라 한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제4조에 따른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나.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

다. 민주화운동으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앓거나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라.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거나 해직되거나 학사징계를 받은 사람

후보생들은 졸업과 함께 장교로 임관하여 각 군별로 정해진 기간 동안 의무복무를 하게 됨.²⁾

후보생 신분인 학생 시기에 민주화운동에 참여하여 그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 당사자들은 군 장교가 될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은 물론, 이후의 사회진출 계획에 영향을 받게 되므로, 국가 권력에 의한 피해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음.

이에 개정안은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범위에 대학생 신분으로 민주화운동에 참여하여 학군사관후보생 지위를 상실한 사람을 추가로 규정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동일하게 민주화운동에 참여하여 학사징계를 받은 사람과 학군사관후보생 지위를 상실한 사람을 함께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함으로써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할 수 있고, 학군사관후보생 지위 상실 피해에 대한 명예회복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보임.³⁾

이와 관련하여 2010년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에서 학군사관후보생 제적 처분 25건에 대한 보상심의가 있었으나, 이는 「군인사법」에 따른

2) 의무복무기간은 육군은 2년 4개월, 해군 및 해병대는 2년, 공군은 3년(공군조종장교의 경우 고정익은 13년, 회전익은 10년)임.

3) 관련자로 인정될 경우 징계권자(학군단장)에게 징계기록 말소, 복학, 명예졸업장 수여 등을 권고할 수 있을 것임.

조치이기 때문에 학사징계로 볼 수 없다는 사유로 불인정 처리된 바 있음을 고려할 때, 법 개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관련자 인정을 위한 재심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다만, 이들에 대한 심사를 위해서는 2015년 이후 활동이 종료된 민주화 운동보상심의위원회의 재개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심의위원회 및 지원단을 재구성하여야 하는바,⁴⁾⁵⁾ 예상되는 신청 수요와 심사 재개의 필요성, 사회적 공감대, 심사를 위한 인력 및 예산 소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정안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⁶⁾

참고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등 유사 입법례는 관련자로 학사징계를 받은 자를 포함하면서도 학군사관후보생 지위를 상실한 자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음.

4) 과거 보상지원단의 최대 규모는 60명이었음(1단장 2과 1실 / 중앙부처 30명, 지방자치단체 17명, 전문위원 13명).

5) 또한 보상심의 재개를 위해 법 제10조제2항의 신청기간 개정이 추가로 필요함.

법 제10조(보상금등의 지급 신청) ① 관련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의료지원금·생활지원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은 이 법 시행일(법률 제8273호 民主化運動關聯者名譽回復 및 補償等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5월 27일을 말한다) 이후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6) 또한 마지막 민주화운동 보상심의 접수가 2007년이었음을 고려할 때, 학군사관후보생 제적 처분의 심사를 위한 보상접수가 재개될 경우 그 이후의 2017년 촛불집회, 2024년 빛의혁명 등에서도 민주화운동 보상 소요가 제기될 수 있고, 이 경우 심사 및 보상의 규모가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관련자의 정의 관련 유사 입법례 》

구분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각목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각목
관련자의 정의	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나.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 다.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앓거나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라.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 마.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수배·연행 또는 구금된 사람 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공소기각·유죄판결·면소판결·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사람	가.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나.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 다.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앓거나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 라.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수배·연행 또는 구금된 자 마.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공소기각·유죄판결·면소판결·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자

※ 관련 법조문 등을 참고하여 작성

개정안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학군사관후보생 지위 상실자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할 경우 징계권자(학군단장)에 대한 징계기록 말소, 복학, 명예졸업장 수여 권고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실질적인 구제조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2015년 이후 활동이 종료된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 및 보상지원단을 다시 구성하여야 하므로, 보상 재개에 대한 실효적인 수요 및 사회적 공감대, 관련 인력 및 예산 등 행정적·재정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며,

국방부는 학생군사교육은 「병역법」에 의하여 병역의 의무를 간부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미 병 또는 다른 신분으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한 자에게 학생사관후보생의 지위를 회복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43